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환수법 유권해석 사례집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환수법 유권해석 사례집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발 간 사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경제 여건이 좋지 않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점검보고서 2022'에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국가채무(중앙정부와 지방·교육 지자체 부채+비영리공공기관의 채무) 비율이 올해 말 54.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공공재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봉직순리(奉職循理)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공직자라면 마땅히 직분을 다하고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재정이 낭비되거나 부정하게 쓰이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이 책임감 있게 관리·운영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공재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1월 1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을 통해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부단히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재정환수법은 다른 법령들과의 관계에서 법 적용 및 해석이 다소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법 해석의 난해함을 줄이고자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집은 법 시행 이후, 최근 3년간('20.~'22.)의 법 관련 유권해석 사례 중 각급 공공기관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법 주요 내용을 조문별로 정리하였고, 평소 우리 위원회에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질의가 많았던 주요 법률 용어 개념, 부정청구등 유형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 등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책 내용에 미흡한 점은 다소 있겠으나, 동 사례집이 각급 공공기관 공공재정 지급금 관련 업무 수행에 활용되고 법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지침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2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목 차 CONTENTS

| | |
|---------------------------|-----|
| 1. 공공기관·행정청·부정수익자 | 05 |
| 2. 공공재정·공공재정지급금 | 23 |
| 3.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제외 | 71 |
| 4. 다른 법률 우선 적용 | 75 |
| 5. 부정청구등 유형 및 부정이익과 이자 환수 | 87 |
| 6.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감면 및 적용배제 | 101 |
| 7. 가산금 및 체납처분 | 115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공공재정환수법 유권해석 사례집 ●

01

공공기관·행정청· 부정수익자



01

공공기관·행정청·부정수익자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를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학교
2.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8. “부정수익자”란 부정이익을 얻은 자(제1호가목의 기관·법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1 공공기관

Q
01

사립학교와 사립학교법인은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데, 공공재정환수법에서도 공공기관으로 보나요?

A

국·공립학교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나 사립학교와 사립학교법인은 공공재정환수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립학교와 사립학교법인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봅니다.

Q
02

A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출연금, 공공기관 기본자산 이자 등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A공공기관이 공공재정환수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 인사혁신처 고시 제2021-4호에 따르면 A공공기관은 공직유관단체에 해당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단체
 2. 법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
 5.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단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를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③ 공직유관단체가 법률 또는 정관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 ④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기관·단체가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행정청

Q

공공기관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예산(예시 : 사업출연금)을 요구하여 공공재정지급금을 교부 받았습니다.

01

공공기관이 위 사업출연금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공공재정지급금 집행 등 행정권한을 부여 받았거나 위임(위탁)받았다면 행정청에 해당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해당 공공재정지급금 집행 등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위탁)받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청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환수, 제재부가금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에 유의하시기 바람

Q

02

공직유관단체도 행정청의 지위를 가질 수 있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직유관단체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해당 공공재정지급금 집행 등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위탁)받은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청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환수, 제재부가금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에 유의하시기 바람

Q

03

아동복지시설 ○○보조금(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시 부과주체가 되는 행정청은 어디인가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에 “행정청”이란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보조금의 경우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되어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비는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고, 도·시비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지원됩니다.

따라서, 국비로 지원되는 비율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에서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으므로 주무부처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도·시비는 지방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보조금법)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지방보조금법)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Q

04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이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2호의 “행정청”에 해당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2호의 ‘행정청’이란 ①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②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을 말합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법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석유사업법 제41조의2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따라서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법 위반행위의 제보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에 있어 공공재정환수법 상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약칭 : 석유사업법)

제41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자 또는 제39조제1항제8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제보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한국석유관리원·품질검사기관 또는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Q
05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운용·관리하는 A공공기관이 공공재정환수법 상 행정청에 해당하나요?

A

‘행정청’이란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2호에 따라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②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을 말합니다.

국가는 ○○법률에 따라 수도권매립지를 환경 상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A공공기관을 설립하였습니다.

A공공기관은 ○○법률에 따라 기존에 조직되어 있던 ○○조합과 ○○공단에 속하는 수도권매립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합니다.

또한, A공공기관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을 조성·운영·관리하고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A공공기관은 폐기물시설촉진법 등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인 주민 지원사업비의 집행 등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정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나. 가목의 (1) 또는 (2)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방법, 공개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6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Q
06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A공공기관이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의 행정청에 해당하나요?

A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 차원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A공공기관은 개별 법률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 집행 등 행정권한을 갖는 공공단체이고, 공공재정환수법이 환수 등에 대한 일반법임을 고려할 때, A공공기관은 법 제2조제2호의 ‘행정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양육비이행법)**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①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청을 받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은 9개월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긴급지원의 대상, 금액, 지급시기 등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⑤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4조의4(비용환수)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 양육비의 반환기간,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
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진흥원이 공공재정환수법 상 행정청에 해당될 수 있나요?

A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공재정환수법 상 행정청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공공재정지급금을 제공하여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경우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해야 합니다.

○○진흥원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라 정보통신산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해당 사업에 있어 행정권한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고보조사업, 방송통신발전기금 또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하는 정보통신방송사업 등 소관 업무 관련 법률에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처분권자를 명시하고 별도로 처분권한을 ○○진흥원에 위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처분권자가 환수 등 제재 처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Q

08

○○장학금 신규 장학생 선발 관련하여 A공공기관은 대학의 참여 신청을 받아 대학별 선발인원 및 선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통보합니다.

대학에서는 자체 선발기준 수립 후 심사 및 선발하여 A공공기관으로 학생을 추천하고, A공공기관은 대학이 추천한 학생의 기본자격만을 확인한 후 장학생을 최종 확정합니다.

이 경우, 장학생 선발권을 보유한 대학이 공공재정환수법 상 행정청에 해당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상 ‘행정청’이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②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을 말합니다.

국가는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A공공기관을 설립하였고, A공공기관은 대학의 장학생 추천에 따라 각종 장학금을 대학을 통해 대상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사실상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의 최종 지급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 집행적 성격으로 보이고, 학자금 지원 제도의 권한은 국가가 관련 법률에 따라 A공공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A공공기관이 공공재정환수법 상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됩니다.

Q
09

○○공사가 자체 수익으로 지원하는 사업에서 제공되는 장려금, 지원금 관련하여 ○○공사가 공공재정환수법 상의 행정청 권한을 가질 수 있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2호에서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을 말합니다.

고효율기기 설치 장려금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고시)에 따라 에너지공급자인 ○○공사가 자체 재원으로 장려금을 집행하고,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지원금은 송전설비주변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인 ○○공사가 자체 재원으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 및 지원금을 집행합니다.

따라서, ○○공사는 법령에 따라 고효율기기 설치 장려금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지원금에 대한 집행 등 행정권한 가지고 있어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판단됩니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9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① 에너지공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는 해당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 및 이용상의 효율향상, 수요의 절감 및 온실가스배출의 감축 등을 도모하기 위한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과 시행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수급상황의 변화, 에너지가격의 변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는 연차별 수요관리투자사업비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관리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요관리투자로 인하여 에너지공급자에게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6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4. 그 밖에 대량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로서 에너지 수요관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그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변경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단기 에너지 수요 전망
 2. 에너지절약 잠재량의 추정 내용
 3. 수요관리의 목표 및 그 달성 방법
 4. 그 밖에 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투자계획 및 그 시행 결과의 구체적인 기재 사항, 작성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송전설비주변법)

제9조(지원사업의 시행 및 중단) ① 지원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원사업의 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1. 사업자
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② 지원사업은 사업자가 지원사업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변전설비의 운영이 3년 이상 중단되어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의 재원으로 부담한다. 다만, 송·변전설비를 소유·운영하는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송·변전설비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재원으로 해당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 ②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재원 또는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업자별 지원금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각 사업자의 전체 지원금액
 2. 지역별 지원금 : 사업자별 지원금의 총합계 금액을 해당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단위로 배분한 금액
- ④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송·변전설비와 주변지역의 특성, 지원사업의 종류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
10

지자체 소재 노인요양시설이 공공재정환수법 상 행정청이 될 수 있나요?

A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 환수법’)」 제2조제2호에서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을 말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 집행 등 행정권한이 있거나 위탁받은 경우가 아니면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부정수익자

Q

교육청 소관 공·사립학교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예산을 요구하여 교부받은 경우

01

1. 공·사립학교가 교육청에서 교부받은 예산이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이 되나요?
2. 교육청 소관 교육지원청도 부정수익자에 해당될 수 있나요?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5조(교육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는 비목의 예산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Q 1-1

공·사립학교가 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한 ‘부정청구등’의 행위를 통해 교육청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을 교부받았다면,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A

※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부정수익자’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만 제외하고 있어 각급 국·공립학교는 부정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포함)

Q 1-2

교육청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기관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1호가목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합니다.

교육지원청은 「교육자치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청의 하급교육행정 기관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상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있어, 동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부정수익자에서 제외됩니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 제121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약칭 : 교육자치법)

-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
02

관계부처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공직유관단체가 공공재정환수법 상의 부정수익자에 해당될 수 있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부정수익자는 부정이익을 얻은 자를 말합니다.

이때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정수익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관계부처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아서 부정청구등 한 경우 공직유관단체는 부정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공공재정환수법 유권해석 사례집 ●

02

공공재정. 공공재정지급금



02

공공재정·공공재정지급금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를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학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 나. 채권(債券)
 - 다. 물품
 - 라. 상품권, 이용권(利用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표
4.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한다.
5.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 등 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3. 「국가재정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등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5. 「고용정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지원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장학금 등 특정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 사회복지 차원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
7.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6조(그 밖의 공공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법 제2조제1호나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

제8조(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 ① 별표에 나열되지 않은 법률 중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의 제공 근거가 있는 법률은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에 포함된다.

②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서 나열되지 않은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금품등 중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포함된다.

Q
01

공공기관이 민간의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도 공공재정인가요?

A

‘공공재정’이란 공공재정환수법(이하 ‘법’) 제2조(정의) 제4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하며,

재정을 조성하는 재원이 공공이든 민간이든 상관하지 않고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이 조성·취득·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은 공공재정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이 민간의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도 공공재정에 해당합니다.

Q
02

A공공기관이 정부교부금 없이 자체수입 예산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에서 제공되는 금품등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상 ‘공공재정’이란 제2조제4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하고, ‘공공재정지급금’이란 제2조제5호에 따라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합니다.

A공공기관은 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A공공기관의 자체수입으로 마련된 예산은 공공재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부교부금이 아닌 자체수입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이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이라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Q
03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이하 “공동주택아파트”)가 집행하는 예산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4호는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호는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아파트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공동주택아파트가 조성·취득 또는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재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리규약은 법 제5조에 규정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재정이 아닌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제공되는 금품등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고,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
0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신고 포상금이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5호의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 환수법’)상 ‘공공재정’이란 제2조(정의) 제4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하고,

‘공공재정지급금’이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합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제41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1항은 ‘위반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제보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유사업법 제41조의2의 ‘포상금’은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해당하므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의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약칭 : 석유사업법)

제41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자 또는 제39조제1항제8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제보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Q
05

시장형공기업이 자체수익으로 편성된 신고포상금을 법률에 근거함이 없이 사내규정으로 지급하는 경우 포상금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상의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그 지급근거가 있을 것, ②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일 것 등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공공재정지급금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해서는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3201 판결 참조)

따라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지급 근거가 없이 사내규정에 따라 신고자들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상의 '공공재정지급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3201 판결

법의 입법취지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으로서 법치행정의 원리상 엄격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고 또한 그 근거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성을 요하며 그 침해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함부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므로,



Q
06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별표에 개별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8조(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에는 동 규정 별표1에 나열되지 않은 법률 중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의 지급 근거가 있는 법률은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별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공재정지급금의 근거 법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07 A공공기관이 B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특허비용 ○○지원 사업’ 관련 A공공기관이 기업에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을 체결한 특허법인에 비용을 지급하여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도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해당 사업비는 A공공기관이 소관부처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으로 조성한 재원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상 ‘공공재정’에 해당합니다.

또한, A공공기관이 ‘특허비용 ○○지원 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 기업에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사업비는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급방식(직접지원 또는 특허법인을 통한 간접지원)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음

Q

08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공공재정지급금 규정”이라 한다)에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관련 법과 예산비목(일반수용비)이 포함 되어 있지 않는데 해외정착지원금을 공공재정지급금으로 볼 수 있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하고,

공공재정지급금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별표에 나열되지 않은 법률 중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의 제공 근거가 있는 법률은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공공재정지급금 규정에서 나열되지 않은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금품등 중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은 사업 관련 법에 근거하여
○○공단에서 조성한 재원으로 해외 취업자에게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지원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사업 관련 법과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예산 비목이 공공재정지급금 규정에 누락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재정지급금 규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은 법령에 근거하여 공공재정에서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중앙행정기관이 이차보전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지원하는 대출금리 이차차액(이차보전금)이 공공재정지급금인가요?

09

예시

| | | | |
|--|---------------|-------------------|------------------------------------|
| 융자금 및 이자 부담 관계_기준금리 2.68%('20. 4분기 기준) | | | |
| 협약은행 | | 지원대상기업 (용자사업자) | |
| 융자금 | 협약금리 0.38% | 대출금리 0.34% | 중앙행정기관 이자차액 (이차보전금) 1.96% |
| ※ 기준금리는 전분기 두번째 달 한국은행 고시금리 적용 | | | |

A

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차보전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이차보전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제5호 및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3조제5호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됩니다.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고용정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지원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장학금 등 특정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3조(중앙행정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지침을 따르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

1. 310-01 손실보상금
2. 310-03 포상금
3. 310-04 기타보전금
4. 320-01 민간경상보조
5. 320-05 이차보전금
(이하 생략)

Q
10

교육청, 구청이 사립학교에 각각 지원한 목적사업비(620-03), 보조금(308-08)이 공공재정지급금인가요?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교육청, 구청이 사립학교에 각각 지원한 목적사업비(620-03),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308-08)는 공공재정지급금으로 판단(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 참조)됩니다.

※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나열되지 않은 법률 중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의 지급 근거가 있는 법률은 공공재정지급금의 근거 법률에 포함됩니다(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8조).

☑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행정안전부의 예산 편성지침을 따르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

1. ~ 13. (생략)
14.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5. ~ 20. (생략)

제5조(교육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교육부의 예산 편성지침을 따르는 시·도 교육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

1. ~ 9. (생략)
10. 620-03 목적사업비
11. ~ 19. (생략)

Q
11

「양육비이행법」상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금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공공재정지급금이란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합니다.

A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라 사회복지 차원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고, 재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이며, 예산이 기관 내에서 기타보전금*으로 편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재정 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연금과 기타보전금은 「공공재정지급금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 예산 비목에 해당함



Q
12

공사가 자체 수익으로 각각의 법에 따라 제공하는 장려금, 보상금, 지원금이 공공재정지급금인가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 환수법’)」 제2조(정의) 제5호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고효율기기 설치지원 사업

고효율기기 설치 장려금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의거 위임 받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에너지공급자인 공사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고효율기기 설치 고객에게 제공하는 금전으로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됩니다.

2 송배전 선하지 보상

송배전 선하지 보상금은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라 전기사업자인 공사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금전으로, 각급 법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관련 판례 및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에 따라 공사가 민법상 구분지상권을 취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하지 보상금은 사실상 토지의 지상 공간 사용에 따른 임료(賃料)임에 따라 상당한 반대급부가 있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송·변전 주변지역 지원·보상 사업

재산적 보상금은 송전설비주변법 제4조에 따라 사업자인 공사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34만 5천 볼트 이상 고압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금전으로, 보상범위가 확대*된 ‘선하지 보상금’ 성격의 보상금임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기사업법에 따른 선하지 보상금은 전압 크기에 상관없이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 부터 3미터 이내가 보상범위이나,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재산적 보상금은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 13미터 이내, 50만 볼트는 20미터 이내, 76만 5천 볼트는 33미터 이내가 보상범위임

A

A

주택 매수비용은 송전설비주변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인 공사가 지상에 34만 5천 볼트 이상 고압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주거상·경관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속한 주택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사업자인 공사가 해당 주택 및 대지를 매수하는 금전으로, 종국에 공사가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상당한 반대급부가 있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주변지역지원금은 송전설비주변법 제6조부터 제11조에 따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지원하는 금전으로, 사업자인 공사가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주민 등에게 제공함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됩니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9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① 에너지공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공급자는 해당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 및 이용상의 효율향상, 수요의 절감 및 온실 가스배출의 감축 등을 도모하기 위한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과 시행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별 수요관리투자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수급상황의 변화, 에너지가격의 변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는 연차별 수요관리투자사업비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관리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요관리투자로 인하여 에너지공급자에게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16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4. 그 밖에 대량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로서 에너지 수요관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그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변경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단기 에너지 수요 전망
 2. 에너지절약 잠재량의 추정 내용
 3. 수요관리의 목표 및 그 달성 방법
 4. 그 밖에 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투자계획 및 그 시행 결과의 구체적인 기재 사항, 작성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송전설비주변법)

제9조(지원사업의 시행 및 중단) ① 지원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원사업의 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1. 사업자
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② 지원사업은 사업자가 지원사업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변전설비의 운영이 3년 이상 중단되어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의 재원으로 부담한다. 다만, 송·변전설비를 소유·운영하는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송·변전설비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재원으로 해당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재원 또는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업자별 지원금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각 사업자의 전체 지원금액
2. 지역별 지원금 : 사업자별 지원금의 총합계 금액을 해당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단위로 배분한 금액

④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송·변전설비와 주변지역의 특성, 지원사업의 종류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

13

A공공기관이 소방산업체와 공동연구결과로 시제품을 개발하고, 공동명의로 특허등록 및 논문제출을 하고 있는 ‘소방용품 및 장비 실용화 공동 연구개발 사업’이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와 관련한 ‘상당한 반대급부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나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 환수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르면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국가재정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품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사업은 A공공기관에서 공모를 통해 다수의 소방산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개발 과제 제안서를 심의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과제수행에 소요되는 직접비(예산비목 : 연구개발비)와 전문연구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A

소방산업체가 위 사업에 따른 연구 결과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지적 재산권을 신청할 때에는 A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구개발 결과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A공공기관에서 지원한 금액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업이 상당한 반대급부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제수행에 사용되는 비용 부담의 주체 및 지원에 따른 결과물의 귀속 여부와 수익 창출에 따른 대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사업의 경우 A공공기관에 독점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점, 수익 창출에 따른 대가로 지원금의 10%의 기술료만을 징수할 뿐이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자는 A공공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금전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반대급부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을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Q
14
국가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에 지급하는 전수교육지원금이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인가요?
A

공공재정환수법(이하 “법”) 상 공공재정지급금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합니다.

전수교육지원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문화재청이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등에게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 등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 무형문화재법)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육사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국가무형문화재의 이수자 중에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전승공동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6항에 따른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무형문화재법 시행령)

제22조(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매월 지원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삭제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Q

15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A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클라우드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사업’에서 창업기업에 지원된 사업화자금이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지원절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 환수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르면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르면 「고용정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지원금 등 특정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A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A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클라우드 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사업’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펀딩 등록비용(중개수수료 등)을 지원하고, 펀딩 등록기업 중 펀딩목표를 달성한 기업에게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클라우드 펀딩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게 제공되는 사업화자금 지원은 아이템 개발비 및 지식재산권 출원비 등 기업에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펀딩 성공 금액의 50%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50백만원을 한도로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A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 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클라우드 펀딩 등록 및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게 지원하는 사업화자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정 정책목적 달성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위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Q 16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어린이집 보조금은 공공재정지급금인가요?
A

공공재정환수법 상 ‘공공재정’이란 제2조제4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하고, 또한, 이 법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이란 제2조제5호에 따라 ‘①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②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합니다.

본 건 어린이집 보조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관리하여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등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Q 17
사립학교에 지급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이 공공재정지급금인가요?
A

공공재정환수법 상 공공재정지급금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합니다.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법」 제43조에 따라 사립학교가 공립학교 수준으로 수업료를 징수하거나,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교육청이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부족액을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상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단,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성질상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 환수, 제9조의 제재부가금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을 우선 적용함

☑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Q
18

소비지원금이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는지요?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따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서 총 7가지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소비지원금’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의 부양과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에게 할인판매 또는 인센티브 이외의 추가로 지급한 지역화폐를 말하고,

지자체는 생애 최초로 ○○지역화폐를 일정 금액 이상 충전한 신규 이용자와 일정 금액 이상 누적 결제한 기존 이용자에 대해 소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소비지원금은 ‘침체된 경기의 부양과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치법규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제5호(특정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공공재정지급금으로 판단됩니다.

Q
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긴급 지원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이 공공재정지급금인가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이란 제2조제5호에 따라 ‘①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②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합니다.

A

본 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은 고용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무급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Q
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의 ‘자활급여’가 공공재정환수법 상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자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제1항제7호 및 제15조(자활급여)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실시하는 급여를 말하고, ○○지자체는 위 법률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활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 촉진 및 생활 안정화’를 목적으로 법률 및 자치법규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 제6호(사회복지 차원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이라고 판단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약칭 : 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제15조(자활급여) ①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3.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4.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6.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7.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② 제1항의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비영리법인·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Q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장기요양급여가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의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 환수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제5호의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따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서 총 7가지의 공공재정지급금 유형에 대해 규정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호 및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하고,

국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장기요양보험)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 보험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관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의 보험자가 됩니다.

A

장기요양보험은 「대한민국헌법」 전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제31조 내지 제36조) 등에서 수용하고 있는 사회국가원리*에서 파생된 사회연대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적인 약자에게도 사회보험의 급여를 주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보험료 산정에 개인별 등가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장기요양보험) 제3항에 따라 강제가입의무가 부과되므로,

* 헌법재판소 2002. 12. 18. 2002헌마52 결정

** 헌법재판소 2001. 8. 30. 2000헌마668 결정

가입 여부가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피보험자 개인이 지니는 보험위험(위험발생 정도, 개연성)에 따라 보험료 산정이 달라지는 등 보험법적 관계가 민법 상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사보험과는 그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이러한 장기요양급여의 공공재정지급금 해당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

해당 급여는 고령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간병 등의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증진 차원에서 제공되는 점, 사업의 재원은 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으로 그 재원 비율이나 조달 방법에 관계없이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으로서 공공재정에 해당하는 점, 보험급여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할 목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사실이나, 해당 보험료는 피보험자 개인의 보험위험 정도와 관계없이 사업의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피보험자의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액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보험료의 부담 없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국가가 이 사업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법으로 조세가 아닌 보험의 방식을 택한 결과로서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보험가입자 일반에 부과되는 것일 뿐, 개별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되는 관계에서는 제공되는 급여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장기요양급여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 제6호(사회복지 차원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 공공재정지급금으로 판단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들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들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②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보험) ①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 ②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 ③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납부·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장기요양 보험료”로,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본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라.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업무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2.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징수
3. 보험급여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6.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7. 의료시설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10. 이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11.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 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3.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Q

「고용보험법」 제21조에 따라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공공재정지급금 인가요?

22

* 고용유지지원금 :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를 목적으로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지원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 환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제4호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공공기관에 해당되고,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은 공공재정에 해당됩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공공재정지급금”이란 ①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②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③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르면 「고용정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지원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장학금 등 특정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A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 공공재정지급금인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 ① **(법령 근거 여부)**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21조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바 법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 ② **(공공재정 여부)** 고용노동부는 공공재정환수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되며,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은 공공재정에 해당되므로, 고용노동부에서 조성·관리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공공재정에 해당됩니다.
- ③ **(반대급부 여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게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A

[결론]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라는 특정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법령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열거하고 있는 예산비목은 공공재정환수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선 행정기관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열거한 것으로, 수시로 변경되는 예산비목을 적시에 고시에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동일한 예산비목 내에서도 사업에 따라 반대급부 여부가 다를 수 있어 고시에서 나열한 예산비목만으로 공공재정지급금 여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비록 고시에서 특정 예산비목을 공공재정지급금으로 열거하였다 하더라도 공공재정환수법령에 비추어볼 때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 체계상 해당 예산비목을 공공재정지급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임

※ '22. 5. 2. 개정된 고시에서 제8조제2항을 추가한 것은 새로운 내용을 창설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해석되던 바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한 것임

제8조(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 ②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서 나열되지 않은 예산비목에 해당하는 금품등 중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포함된다.

☑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Q

23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직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구직급여’*는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국민권익위 고시)의 예산 비목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 구직급여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지원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 환수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됩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의하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을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고려하여 이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A

헌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도입된 「고용보험법」에 대하여 제1조를 보면,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등을 꾀하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는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공공재정환수법 상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됩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 ⑥ (생략)

☑ 고용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이직일 이전 24개월
 -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제44조(실업의 인정) ①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업의 인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2. 천재지변, 대량 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
 2.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업을 인정할 때에는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취업 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소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Q

24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이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인가요?

A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와 신성장동력분야, 융복합분야 등의 전략산업 전문인력육성, 산업계 주도의 지역별 직업훈련기반 조성 등을 위해 복수의 중소기업과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협약을 구성한 기업 등에게 공동훈련에 필요한 훈련 인프라와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보험법」 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제1항, 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1항제3호 등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보조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보상금, 출연금과 함께 대표적인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므로 국고보조사업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은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사업
2. 자격검정 사업 및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생략)

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5. (생략)

6.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직업능력 개발사업

7 ~ 15. (생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이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받을 수 있는 연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한도액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개별금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해당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수행 주체에게 직접 지원한다. 이 경우 개별금액은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이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지원의 한도에서 각각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신청과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약칭 : 직업능력개발법) [시행 2021. 4. 6.] [법률 제17883호, 2021. 1. 5., 타법개정]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용자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4 ~ 7. (생략)

② ~ ③ (생략)

Q

25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는 A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가 공공재정 환수법 제2조제5호의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 환수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제5호의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따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서 총 7가지의 공공재정지급금 유형에 대해 규정합니다.

활동비란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제23조의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따라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일환으로 사업 참여자인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고,

A

A지방자치단체는 지원받은 보조금에 자체예산을 매칭하여 공공형 사업 참여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101-04)의 명목으로 활동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비의 공공재정지급금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공형 사업은 저소득 노인들의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에서도 공공형 사업의 성격을 봉사(사회활동)로 명시*하고 있는 점, 이러한 공공형 사업의 성격을 고려할 때 활동비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사업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참여 노인에게 제공되는 금품이고 근로제공의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대가라는 성격은 부차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공공재정지급금 여부는 해당 금품의 지급 목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하고 지급 당시의 예산비목에 한정해서 판단할 사항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

* 대구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구단12300 판결에서도 공공형(공익활동) 프로그램의 성격을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정의하면서 참여 노인의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바 있음(해당 판결은 항소심 계속 중)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음

활동비는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으로서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제5호(특정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의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우선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 노인일자리개발·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게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Q

2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사고 피해자 및 가족에게 지원하는 재활보조금, 장학금 등이 공공재정 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 환수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제5호의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따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서 총 7가지의 공공재정지급금 유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활보조금, 장학금,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이하 ‘경제적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지원대상자)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자동차손배법 제30조제2항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39조의11(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설치)에 따른 피해지원기금에서 제공되는 점, 국가가 자동차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경제적지원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제5호(특정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의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약칭 : 자동차손배법)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1.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2.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②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후유장애인(重症後遺障礙人)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③ 생략
 - ④ 정부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의 청구에 따라 보상을 실시한다.
 -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기준·금액·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부의 보상사업(이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약칭 :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21조(지원대상자)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로 한다. 다만, 지원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의 순서로 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일 것
2.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 후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것
- ② 제1항에 따른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22조(지원의 기준 및 금액)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후유장애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지원
 -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요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보조
 -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2. 유자녀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지원
 - 가. 생활자금의 대출
 -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 다. 자립지원을 위하여 유자녀의 보호자(유자녀의 친권자, 후견인, 유자녀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유자녀를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가 유자녀의 명의로 저축한 금액에 따른 지원자금(이하 “자립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
3. 피부양가족 : 노부모 등의 생활의 정도를 고려한 보조금의 지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사업

② 생략

Q

27

○○국립병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의 민간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원되는 위탁보육료가 공공재정지급금인가요?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는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에서는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그 지급근거가 있을 것, ②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일 것 등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지급 근거가 있는지 여부

○○국립병원에서 근로자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등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법령 상 지급 근거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②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37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고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사업주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4조,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영유아 보육관련 비용의 일반적인 부담 및 보조 의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부과하는 반면,

A

A

동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탁보육료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립병원은 사업주로서 자신이 수행하여야 할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의무를 하지 못함에 따라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역 어린이집이 ○○국립병원을 대신하여 근로자 자녀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 이는 반대급부로 볼 소지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위탁보육료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공공재정환수법 상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37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제14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Q

28

상생협력기금은 상생협력법 등에 따라 정부가 아닌 자로부터 출연을 받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A공공기관이 자체방침에 따라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공공재정 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정의됩니다.

이때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지출권한을 부여하는 재정법령으로 봄이 문언의 해석상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공공재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아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한편, ‘법령 또는 자치법규’가 공공재정지급금 제공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부정청구등 행위에 따른 환수, 제재부가금 등 불이익조치 근거가 됩니다.

사안의 경우, 상생협력법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출연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되나, A공공기관이 출연금을 출연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려우며, 법령 또는 자치법규가 아닌 A공공기관이 자체방침에 따라 출연하고 있다면 공공재정지급금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상생협력법)

제20조(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대·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2. 제9조에 따른 기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운영 및 평가 지원
3. 제17조에 따른 수탁기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4.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
5.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6. 제20조의5에 따른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영
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영

8. 상생결제의 관리·운영 및 보급·확산 지원

9. 그 밖에 중소기업부장관이 지정·위탁하는 사업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의5(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대·중소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촉진 및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재단은 상생협력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상생협력기금은 내국법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사업

2.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 사업

3. 대·중소기업 간 인력교류 확대 사업

4. 대·중소기업 간 환경경영협력 촉진 사업

5.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 상생협력기금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상생기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으로 조성한다.

④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억원으로 하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상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 재단은 상생기금이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1의2.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중 농림·해양·수산에 관한 과목을 편성·운영하는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농학·수의학·수산학 등 농어업 관련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및 농어촌 지역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2.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등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3. 정주 여건의 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 경관 개선 등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4. 농수산물 생산, 유통, 판매 등의 분야에서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 협력 사업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사업

6. 상생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 상생협력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Q
29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및 인턴 급여는 공공재정지급금인가요?
A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 환수법’)」 제2조(정의) 제4호에서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하고,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의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부처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에 보조금·출연금 등으로 인건비를 지원·보조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 위의 인건비 보조금 등으로 공공기관이 임·직원(계약직, 인턴 포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는 인건비는 상당한 반대급부가 있는 금품등으로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Q
30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이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 환수법’) 제2조(정의) 제5호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따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서 총 7가지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되어 조례를 근거로 지급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A지자체는 관련 조례에 따라 규정 상 (임무)의 직무를 수행한 통장·이장·반장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자치법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통장·이장·반장에게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공공재정 환수법 시행령 제2조의 공공재정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를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한 환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31

공공기관이 기업에 지원하는 ‘장애인고용 조건 융자금’이 공공재정환수법 상의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상 공공재정지급금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기관이 장애인고용 조건으로 고용주에게 지원하는 융자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및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용자·지원규정」 제5조(용자한도 및 조건)에 따라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로 용자기간 동안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조건으로 연 1% 고정금리로 8년간 상환(3년 거치, 5년 균등분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기업에게 지원하는 융자금은 공공기관과 기업이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기업에서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는 반대급부가 있는 비용으로 공공재정에는 해당하나, 공공재정지급금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 장애인고용법)**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설치·수리 등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3. 장애인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작업 지도원,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낭독자 등을 배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기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자 또는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용자·지원규정

제5조(용자한도 및 조건)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용자금의 한도액은 사업주당 15억원 이내로 하되,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용자금을 받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용자금 1억원당 장애인 1명을 8년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수의 2분의 1을 최종투자확인 시까지 고용하여야 하고, 최종용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 인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2. 용자금에 따른 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을 100분의 25 이상(해당 비율에 따라 산정한 중증장애인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1명 이상) 고용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용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00분의 1로 한다.

④ 용자기간은 거치기간 3년, 균등분할상환기간 5년 등 총 8년으로 한다.



Q

3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급된 손실보상금(지장물* 보상금)이 공공재정환수법에 규정된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되는지요?

* 지장물(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조제3호) :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공작물·시설·입목·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

A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 환수법’)」 제2조(정의) 제5호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법 제70조, 제72조),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법 제71조), 잔여지 등의 보상(법 제73조, 제74조), 건축물 등 물건의 보상(법 제75조), 잔여 건축물의 보상(법 제75조의2), 권리의 보상(법 제76조), 영업 등의 보상(법 제77조), 이주대책에 따른 보상(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 법 제78조) 등이 있습니다.

위의 손실보상금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되는지는 상당한 반대급부의 존재 여부로 각각 판단하여야 하며, 상당한 반대급부가 없는 손실보상금의 경우는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됩니다.

질 의와 관련된 지장물 보상금은 토지보상법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에 따른 물건의 보상을 말하고, 원칙적으로 이전비를 보상하나 몇 가지 사정이 있는 경우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합니다.

지장물 보상금은 사실상 공익사업에 필요 없는 물건의 철거 또는 이전이라는 상당한 반대급부에 대한 대금적 성격의 보상금으로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 토지보상법)

-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②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③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해당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 ④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移葬)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에 있는 건축물등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건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공공재정환수법 유권해석 사례집 ●

03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제외



03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제외

공공재정환수법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관세법」 등에 따른 조세(租稅)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2.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3. 벌금·과료, 몰수·추징 및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과 그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

Q

01

A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과 창업기업 간의 협약 관계가 공공재정 환수법 제4조(적용범위) 제4호*에 해당하나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과 그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

A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 환수법’)」 제2조(정의) 제5호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 등 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을 공공재정지급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재정환수법 제4조제4호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과 그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공재정환수법 대상에서 적용 배제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다수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합니다.

공공기관은 소관부처로부터 지원 받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창업지원사업을 위해 대상으로 선정된 창업기업과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 사건 협약이 공공재정환수법 제4조제4호에 따른 계약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

공공재정환수법 제4조제4호는 이 법의 적용배제 대상을 정한 것으로 해당 문언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인데,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바(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98409 판결 참조). “그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 역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법상 계약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해당 문언의 의미에 충실한 해석으로 보이는 점,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에 대해 개별법률 상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부정청구 등이 적발되더라도 경미한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 등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어 부정청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한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고(2019. 4. 16. 법률 제16323호 제정법률 제정이유), 공공재정환수법 상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하며 따로 공공재정지급금의 제공방식에 따라 대상 여부를 달리하는 등의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부정수급이 문제 되는

A

금품등이 그 성질상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제공방식에 상관없이 이 법의 규율대상으로 보는 것이 공공재정의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여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공공재정환수법의 제정 이유에 부합하는 점,

그 성질이 공공재정지급금임에도 불구하고 지급과정에서 행정상 필요에 따라 수급자와 협약(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함)의 형식을 띠는 사정만으로 규율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하면 협약의 체결 여부에 따라 규율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그러한 차별취급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금품등의 성격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환수법 규율대상 여부를 따지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공재정환수법 제4조제4호에 따른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및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란 공법적 규율 대상으로 삼기 적절하지 않은 “사법상 계약” 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계약관계는 실질적으로 계약당사자 간 상당한 반대급부가 이루어지는 관계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창업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창업기업에 지급하는 사업비는 법령에 따라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출연금 등으로서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협약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계약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제4조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04

다른 법률 우선 적용



04 다른 법률 우선 적용

공공재정환수법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7조의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중단, 정지 또는 중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제8조의 환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환수, 징수, 회수, 반납명령, 반환명령, 반환요구 등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제8조의 환수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환수, 징수, 회수, 반납명령, 반환명령, 반환요구 등을 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환수한 것으로 본다.
- ③ 제9조의 제재부가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2항에 해당하는 환수에 추가하여 환수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금전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제2항에 해당하는 환수에 추가하여 환수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금전을 부과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2조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⑤ 제13조의 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부정청구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⑥ 제15조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2항에 해당하는 환수, 제3항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가산금·체납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은 제외한다)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⑦ 제16조의 명단 공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⑧ 제23조제1항의 포상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Q
01

다른 법률(「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부정이익등을 환수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상의 환수로 볼 수 있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제2항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환수, 징수, 회수, 반납 명령, 반환명령, 반환요구 등을 한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에 따라 환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유아교육법」 제28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 목적외 보조금·지원금 사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 지급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교육법」에 따라 보조금·지원금의 반환명령이 있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한 것으로 봅니다.

☑ 유아교육법

제28조(보조금 등의 반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유치원 목적외에 보조금·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제22조에 따른 교원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한 경우
4. 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한 경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Q

0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은 부정이익 환수 등 제재처분에 관한 일반법으로 다른 법률에 제재처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으면 법 제5조에 따라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해당 사회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경우 관련 예산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으로 공공재정지급금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개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처분은 보조금법에 규정된 내용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외에 지방교육재정에서 교부되는 예산도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되며, 지방재정법 등 다른 법률에 환수 등 제재처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릅니다.



Q

03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등)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금 반환(환수)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환수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은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나요?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제1항에서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 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2항은 ‘제8조의 환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환수 등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제8조의 환수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환수 등을 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환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법에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급 중단,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가산금 및 체납처분, 부정청구등에 대한 조사, 이익신청, 명단 공표, 신고포상금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

「보조금법」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제21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제33조의3(강제징수),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제36조(검사),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제37조(이익신청), 제39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따라서,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등 사업의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은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법을 우선 적용하나,

이러한 환수 등의 경우에도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제2항 하단의 ‘제8조에 따른 환수’로 보도록 한 규정에 따라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에 해당하므로 본 건의 보조금도 당연히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대상입니다.

※ 국고보조금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고, 부정청구등 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 이행실태의 점검 등은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Q

04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부정청구 시 보조금법, 직업능력개발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 중 어떠한 법률을 적용하는지요?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 복수의 중소기업과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협약을 구성한 기업 등에게 공동훈련에 필요한 훈련 인프라와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

A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은 「고용보험법」 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제1항, 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제3항제13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약칭 :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1항제3호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만,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지급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 공표 등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고보조금을 부정청구하였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보조금법)」을 적용하여 환수 및 제재 처분하면 되나,

보조금법도 공공재정환수법과 유사하게 보조금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수, 제재부가금(추가징수금) 부과, 체납처분, 조사의 실시, 명단 공표* 및 포상금은 직업능력개발법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직업능력개발법」의 개정으로 명단 공표 규정이 신설되어 '20. 10. 1.부터 적용 가능

※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에 따라 다른 법률을 적용하여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으로 봄

☑ 고용보험법

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사업
 2. 자격검정 사업 및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생략)

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 ~ 5. (생략)
 6.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 7 ~ 15. (생략)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이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받을 수 있는 연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한도액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개별금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해당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수행 주체에게 직접 지원한다. 이 경우 개별금액은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이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지원의 한도에서 각각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신청과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약칭 : 직업능력개발법) [시행 2021. 4. 6.] [법률 제17883호, 2021. 1. 5., 타법개정]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 1 ~ 2. (생략)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 4 ~ 7. (생략)
- ② ~ ③ (생략)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용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사업주단체등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사업주단체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용자받게 한 경우

5 ~ 7. (생략)

③ ~ ⑤ (생략)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용자 또는 수강의 제한) ① (생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용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근로자나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용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 또는 용자를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용자 받았거나 지원·용자 받으려 한 경우
2.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 또는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와 공모하여 제19조제2항 각 호 또는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인정이 취소된 경우

제56조(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① (생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제2항이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용자가 제한되는 근로자나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용자를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용자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1.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19조제2항이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 그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
 - 나.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그 금액 이하의 금액
 2. 제55조에 따라 지원·용자 또는 수감이 제한되는 근로자나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 :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
- ④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신고 포상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지도·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2.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자
3.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원 또는 용자를 받는 자
4.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단체 및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6. 제36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자
7. 제59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자에게 미리 조사 일시·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지도·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사를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 보고의 방법, 자료의 제출 및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Q

05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시 환수, 제재부가금, 체납 처분, 명단공표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이 있어 이를 적용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상 ‘공공재정’이란 제2조제4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합니다.

또한, 이 법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이란 제2조제5호에 따라 ‘①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②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조성·관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등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다른 법률에 환수·제재부가금·체납처분·명단공표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건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환수 등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분함이 타당합니다.

Q

06

공공재정지급금 관련한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여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다른 법률(이자납부 규정 없음)에 따라 환수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에 따른 이자를 부과해야 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항에서 ‘제8조의 환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환수, 징수, 회수, 반납명령, 반환명령, 반환요구 등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제8조의 환수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환수, 징수, 회수, 반납명령, 반환명령, 반환요구 등을 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환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을 때,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제2항에 의해 다른 법률에 환수(이자납부 규정 없음) 등의 규정이 있어 그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 경우는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에 따라 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법률에 의한 환수에 더하여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별도의 이자 부과 처분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Q

07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한 국고보조사업에 보조금법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시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적용이 가능한가요?

A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이란 제2조제5호에 따라 ‘①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②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합니다.

본 건의 보조금은 법령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것으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 발생 시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다른 법률에 환수 및 제재부가금 등 그 내용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등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재부가금 제도의 경우 부과·징수, 감면, 적용배제 등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제도로써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제재부가금은 보조금법에 따라 부과하면서 감면과 관련해서 공공재정환수법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자 제정된 이 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해당 입법권자가 법 집행 목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규정한 개별법의 제재부가금이라는 단일한 제도를 임의로 변경하여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제재부가금의 부과 수준과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본 건의 경우, 보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공공재정환수법 유권해석 사례집 ●

05

부정청구등 유형 및 부정이익과 이자 환수



05

부정청구등 유형 및 부정이익과 이자 환수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다.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법인·단체의 기준·규정·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라.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7. “부정이익”이란 부정청구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등(정당한 권리나 자격이 인정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 ②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③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이익등의 환수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환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3조(환수금액의 산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 ② 제1항에서 “부정이익 가액”이란 부정이익의 금액(금전이 아닌 금품등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6호가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 제공받은 공공재정 지급금액
 2. 법 제2조제6호나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 과다하게 청구하여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에서 원래 받아야 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뺀 공공재정지급금액
 3. 법 제2조제6호다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 법령·자치법규나 기준(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법인·단체의 기준·규정·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공공재정지급금액
 4. 법 제2조제6호라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 지급금액
- ③ 제1항에 따른 이자의 계산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다만, 부정수익자가 환수처분 통지 전에 부정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의 계산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부정이익을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제4조(환수절차) ① 행정청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정이익과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해당 부정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환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1. 환수 사유
2. 부정이익
3. 이자
4. 환수금액(부정이익과 이자의 합산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납부기한
6. 납부기관
7. 납부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금액을 받은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수금액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부정이익등의 환수처분을 한 행정청에 통보해야 한다.

1 부정청구등 유형

Q

01 교육청은 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유치원비 동결 및 인하 등 원비 인상을 상한제를 준수한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학급운영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고의 또는 착오로 원비항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하여 교육청에 원비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게 됨으로써, 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위반하는 동시에 결과적으로 학급운영비를 과다 수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치원에서 직접 청구하지는 않으나, 사립유치원에서 보고한 원비 수준에 따라 운영비가 차등 지원되는 경우도 공공재정환수법 상 부정청구등에 해당하는 행위인가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한 ‘부정청구등’이란 허위청구, 과다 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의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에서 학급운영비를 직접적으로 청구하지 않더라도, 유치원에서 보고한 원비항목에 따라 학급운영비 수준이 결정된다면, 유치원의 보고행위를 청구행위로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에서도 교육청에 보고한 원비항목을 토대로 학급운영비가 결정됨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거짓이나 허위의 방법으로 보고하여 운영비를 과다 수급한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정청구등’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

02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제1호나목3)은 “만 2세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8명을 보육하였을 경우 어떤 부정청구등 유형에 해당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6호에서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A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다.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법인·단체의 기준·규정·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라.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제1호나목3)은 “만 2세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상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1명 초과할 경우, 초과 인원은 1명이지만 이로 인해 전체 연령별 보육인원 기준을 위반하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가목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환수 등은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위 해석은 공공재정환수법에 한정하므로, 보조금법 또는 지방보조금법 적용사항에 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⑤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과 그 수
-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Q

공공기관은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 저소득층 성적 우수고등학생에게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03

위 장학사업에 따라 장학금을 계속지원(단발성 지원이 아님)하는 경우 일정 요건의 성적기준 충족이 요구됩니다.

이때 장학생이 성적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상 '허위청구'와 '과다청구'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공공재정환수법 상 '허위청구(법 제2조제6호가목)'와 '과다청구(법 제2조제6호나목)'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허위청구'는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음'에도 청구하는 행위이고, '과다청구'는 청구할 자격은 있으나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A

해외장학생의 장학금 계속지원 기준은 이수학점, 성적 등을 모두 만족해야 하고, 해외 대학 재학기간 동안 성적 등 미달 시 장학생 자격을 박탈합니다.

따라서, 성적 기준은 해외장학생의 계속지원 자격 요건에 해당하고, 위조한 성적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해당 학기 장학금 신청 시점에서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학기의 장학금 청구자격을 상실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허위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

04

교육청에서 소속 기관인 교육지원청을 거쳐 공립학교에 옥상방수공사 예산을 목적사업비로 교부하였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옥상방수공사' 예산을 '본관 교실 바닥 공사'로 집행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상 부정청구등 유형인 '목적외사용'에 해당하나요?

A

목적사업비의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5조(교육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에 포함되므로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해당 학교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인 목적사업비를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나 목적(용도)과 달리 사용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 다목에 따른 '부정청구등'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도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령·자치법규 등에서 규정한 예산 전용(변경)기준을 준수하는 등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사전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소비지원금’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경기의 부양과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에게 할인판매 또는 인센티브 이외의 추가로 지급한 지역화폐를 말합니다.

05

생애 최초로 ○○지역화폐를 20만원 이상 충전한 신규이용자 및 ○○지역 화폐로 20만원 이상 누적 결제한 기존이용자에 대해 소비지원금 5만원을 지급(사용기한 1개월)합니다.

소비지원금을 지급 받은 신규이용자가 ○○지역화폐 충전을 취소하여 충전액이 20만원 미만이 되거나 기존 이용자가 결제를 취소하여 ○○지역 화폐 누적 결제액이 2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소비지원금 환수대상액이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7호의 ‘부정이익’에 해당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7호에서 “부정이익”이란 부정청구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등을 말합니다.

또한, 부정청구등이란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에서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 등 4가지 유형을 말합니다.

소비지원금의 환수대상은 소비지원금을 지급 받은 신규이용자가 ○○지역 화폐 충전을 취소하여 충전액이 20만원 미만이 되거나 기존 이용자가 결제를 취소하여 ○○지역화폐 누적 결제액이 2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용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소비지원금을 받았다거나 (허위청구·과다청구), 이를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한(목적외사용)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정변경(충전 또는 결제 취소)에 따른 오지급으로 판단되며,

공공재정환수법에서는 오지급도 부정청구등 유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소비지원금 환수대상액은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정이익에 해당합니다.

Q

정부는 정부 학자금이 다른 학자금지원과 중복하여 제공되지 않도록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6

非공공재정지급금으로 발생하는 학자금 중복지원*도 공공재정환수법 상 오지급으로 볼 수 있나요?

* 공공기관 장학금 지급 후 공익법인 등이 장학금을 중복 지급하는 경우 등

A

공공재정환수법 상 ‘공공재정’이란 제2조제4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합니다.

또한, 이 법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이란 제2조제5호에 따라 ‘①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②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합니다.

본 건 학자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조성·관리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이 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 각 목에서 규정한 ‘부정청구등’의 행위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환수 등 관련 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라목의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란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되어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위 ‘잘못’이라는 것은 고의·과실 등으로 인해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지급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결과적으로 지급되어 공공재정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학생이 공공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은 뒤에 공익법인 등 타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관련 법령이 금지하는 중복지원이 발생된 것으로 중복 지원된 학자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라목의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Q

07

국가가 A단체에 지급하는 ○○지원금(공공재정지급금)을 A단체의 사무직원이 횡령한 경우 부정청구등에 해당하는지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는 “부정청구등”에 대해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청구하거나(가목),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나목) 또는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다목) 등으로 정합니다.

○○지원금은 국가가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 등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A단체 사무직원이 이를 횡령한 행위는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청구하는 행위(가목)나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나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사안이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다목)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면,

부정청구의 주체는 지원금을 수령한 주체인 A단체 또는 해당 A단체와 동일시 할 수 있는자(예를 들어 대표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무직원은 해당 A단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따라서, 사무직원의 지원금 횡령행위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청구등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대상으로 보기에는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 위 해석은 기관에서 제공한 관련 자료에 나타나 있는 쟁점 등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Q

08

사립학교 행정실 소속 사무직원이 공공재정지급금으로 전액 지원받고 있는 교직원 급여를 횡령하였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다목의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는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목은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청구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주체는 교육청이고, 지급받는 주체는 해당 사립학교로 판단됩니다.

공공재정환수법 규정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제공받는 자가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다목의 부정청구등(목적외사용)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을 제공받는 주체인 학교가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단지 공공재정지급금을 관리하는 회계업무 담당자가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횡령한 것이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는 별론으로 하고 공공재정환수법 상 부정청구등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위 해석은 기관에서 제공한 관련 자료에 나타나 있는 쟁점 등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부정이익과 이자 환수

Q
01

공공재정지급금의 오지급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부과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제1항은 4가지 유형의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환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오지급을 다른 부정청구와 달리 이자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오지급의 경우에도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환수하여야 하고, 이때 이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자의 계산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2조제1항은 환수처분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02

부정수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을 개별법에 따라 환수할 때 이자 부과 규정이 없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자를 환수할 수 있나요?

A

개별법 상 환수 규정에 이자 환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상 이자 환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1항에 '행정청은 부정이익과 이자를 함께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정이익 환수와 이자 환수는 불가분한 것이므로 다른 법률에 따라 환수할 경우 부정이익 환수는 다른 법률을 적용하고 이자 환수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개별법을 적용하여 환수할 경우 이자 환수도 개별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개별법에 이자 환수 규정이 없을 경우 이자는 환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Q
03**행정청이 자활급여를 오지급한 경우 이자 부과를 해야 하나요?****A**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환수, 징수, 회수, 반납명령, 반환명령, 반환요구 등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의 환수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7조(반환명령)에는 환수에 해당하는 규정이 존재하나 이자 부과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오지급된 자활급여 환수 시 이자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약칭 : 기초생활보장법)**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제47조(반환명령) ①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Q

04

○○재단은 A지자체 거주 대학생 대상으로 '○○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금이 오지급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지원금의 환수가 가능한가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정이익등(이자 포함)을 환수하여야 합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에 의하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는 행정청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조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취득한 금품등인 공공재정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금품등을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하고,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등(오지급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고려하여 이 사안을 살펴보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재단법인 ○○재단은 A지자체 조례에 따라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에 관한 사업을 지자체장으로부터 위탁받았고, 위 조례에 따르면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금은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는바,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금(공공재정지급금)의 오지급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정이익등(이자 포함)을 환수하여야 합니다.

06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감면 및 적용배제



06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감면 및 적용배제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① 행정청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제재부가금의 부과·납부·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를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기 전(같은 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환수처분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행정청은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행정청은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④ 제재부가금 부과 및 감면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환수 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수회에 걸쳐 부정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누적된 금액을 말한다)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3.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 등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의 기준은 부정이익등의 금액, 부정이익등을 얻은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5조(제재부가금 부과·감면의 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제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감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부정청구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정청구등이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부정청구등이 행정청의 과실 등 부정수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제재부가금의 부과·납부절차) ① 행정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해당 부정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1. 부정청구등의 종류

2. 제재부가금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5. 납부방법

② 제재부가금의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수금액”은 “제재부가금”으로, “부정이익등의 환수처분”은 “제재부가금의 부과처분”으로 본다.

제7조(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환수 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은 환수처분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과거 3년간의 누적 금액으로 할 것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부정청구등으로 해당 공공재정 지급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부터 과거 3년간 해당 부정수익자의 부정 청구등이 적발된 사실이 없을 것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회의 부정청구등의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부정수익자가 부정청구등을 한 공공재정 지급금을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여 행정청이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별표 1]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감면 기준 (제5조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부정이익 가액 | 제재부가금 부과율 |
|--------------------------|-----------|
| 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 | 500% |
| 나.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 | 300% |
| 다.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 | 200% |

2.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2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3.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4. 행정청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과태료등"이라 한다)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보다 많은 경우 : 제재부가금에서 과태료등을 빼고 부과할 것
 - 나.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과 같거나 과태료등보다 적은 경우 :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
5. 행정청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부과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보다 많은 경우 : 제재부가금에서 과태료등을 감경할 것
 - 나. 부과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과 같거나 과태료등보다 적은 경우 : 제재부가금을 면제할 것

1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Q
01

보조금이 일정 비율로 각각 매칭(국비, 도비, 시비)되어 수급자에게 지원됩니다. 위 보조금 관련하여 부정청구 발생 시 제재부가금 부과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제1항은 “행정청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항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2항에 해당하는 환수에 추가하여 환수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금전을 부과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법 제33조의2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반환 등을 명할 경우 그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법 제35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되는 국비는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근거가 있는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라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보조금법)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지방보조금법)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Q

02

공공기관 직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지급한 경우 환수와 더불어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나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 환수법’)」 제2조(정의) 제4호에서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하고,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의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기관이 주관부처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출연금을 재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때,

A

공공기관이 주관부처의 지침이나 자체 규정에 맞지 아니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목적외사용)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의 부정청구에 해당하여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주관부처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이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기관 직원이 근로계약 체결로 인한 근로 대가로 지급받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이므로 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환수나 징계를 할 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직원 개인의 일탈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은 공공재정환수법의 규율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2 제재부가금 감면 및 적용배제

Q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항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보조금법’)」을 우선 적용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경우,

01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제1항의 규정(사전 통지 전 부정수익자의 자진신고 및 부정이익등의 모두 반환에 따른 제재부가금 미부과)을 적용할 수 있나요?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에 따른 환수 및 제재에 대한 일반법으로, 각 개별 법률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개별 법률에 지급중단, 환수, 제재 부가금, 가산금 및 체납처분, 조사, 이의신청, 명단공표, 포상금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경우 개별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법을 우선 적용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재부가금 제도는 부과·징수, 감면, 적용배제 등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제도로써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A

제재부가금은 보조금법에 따라 부과하면서 감면과 관련해서 공공재정환수법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자 제정된 이 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개별 법률의 제재부가금 제도를 임의로 변경하여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제재부가금의 부과 수준과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보조금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경우, 보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말해, 보조금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경우에는 공공재정 환수법 제10조(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제11조(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보조금법에 따른 제재부가금 감면 및 적용배제 규정을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02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후 부정수익자가 환수액을 전액 납부했을 때, 제재부가금을 감면할 수 있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부정수익자가 행정청의 환수처분 전에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수익자가 환수처분 이후에 환수액을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
03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사전통지서 발송 기준일(공공재정환수법 상의 사전통지일)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거쳐 환수하고,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상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상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의 사전통지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될 때 사전통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판례(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828)

이 사건 처분은 침해적 행정처분인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므로, 피고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미리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8. 18. 원고에게 이 사건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나, 발송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전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Q
04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에 같음하는 과징금만큼 제재부가금을 감면할 수 있나요?

A

어린이집 대표(원장)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보조금 허위청구를 사유로 부과된 것*으로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에 해당하여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징금만큼 제재부가금을 감면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1항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및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참고로 제재부가금 부과와 관련하여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의 제재부가금 부과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제재부가금 ‘감면’ 규정과 ‘적용 배제’ 규정도 공공재정환수법이 아닌 다른 법률의 ‘감면’ 규정과 ‘적용 배제’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 또는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 1의4.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 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제33조의2 및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나.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Q**05**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로 부정이익가액 외에 추가로 환수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제재부가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나요?

A

위 질의의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에 따라 부정이익가액 보다 과다 환수한 차액이 과징금, 과태료 등에 해당하여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2항의 제재부가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2항의 입법취지는 제재부가금과 같은 성격의 금전적 제재처분인 과징금, 과태료 등의 부과액만큼 제재부가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조금 환수는 부정청구등으로 인해 교부한 보조금의 취소결정에 따라 행정청이 제공한 보조금을 반환받는 처분행위이므로 제재부가금이나 과징금 같은 금전적 제재처분으로 볼 수 없어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2항의 제재부가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제재부가금 부과와 관련하여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의 제재부가금 부과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제재부가금 ‘감면’ 규정과 ‘적용 배제’ 규정도 공공재정환수법이 아닌 다른 법률의 ‘감면’ 규정과 ‘적용 배제’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Q**06**

행정청은 ○○지원금(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해 지원금 대상자가 '19. 10월부터 '20. 6월까지 총 1,440,000원 ('19. 10월 ~ 12월 : 480,000원, '20. 1월 ~ 6월 : 960,00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발견하여 '20. 7월에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어떻게 부과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은 법 시행('20. 1. 1.)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합니다.

질의 사례의 경우 '20. 1월 ~ 6월까지 지급된 ○○지원금 960,000원은 공공재정환수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라 환수처분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과거 3년간의 누적된 환수금액(이자 제외)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공공재정환수법 유권해석 사례집 ●

07

가산금 및 체납처분



07 가산금 및 체납처분

공공재정환수법

제12조(가산금 및 체납처분)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처분을 받거나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처분 또는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8조(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1.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 100분의 2.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
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 제1호 본문에 따른 이자율에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00분의 1을 더한 이자율. 다만, 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Q

가산금 산정 관련

01

1. 환수처분에 대한 체납만으로도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와 이 경우 가산금 산정을 위한 이자율은 연 이자율인가요?
2. 공공재정환수법 상 최대 이자율인 5/100를 최대 60개월까지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요?

A

Q 1-1

제재부가금 부과 없이 환수처분만 받은 경우라도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지 않았다면, 법 제12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연 이자율입니다.

Q 1-2

법 제12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0개월입니다.

7

가산금 및 체납처분



Q
02

공공재정환수법 제12조제1항에 의해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매월 가산금이 누적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종합하면 제재부가금을 부과 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는 100분의 2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8조제1호 본문에 따른 이자율에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00분의 1을 더한 이자율(다만, 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금 부과는 1주 이내 1%, 1개월 이내 2%, 2개월 이내 3%, 3개월 이내 4%, 3개월 초과 시에는 5%를 징수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가중되지 않음)

※ 참고로, 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는데 가산금을 가중하여 부과하면 5%를 초과하게 됨



Q
03

체납된 금액(통지금액)이 1천만원이고 2개월 이내에 납부하게 되면 가산금은 얼마인가요?

A

환수처분을 받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의 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날부터 부정이의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합니다.

따라서, 체납된 금액(통지금액)이 1천만원이고 2개월 이내에 납부하게 되면 1천만원 × 100분의 3이 되어 30만원이 됩니다.

Q
04

공공재정환수법 상 체납액을 납부기한 다음날 완납하였을 경우 가산금이 얼마인가요?

A

‘가산금’은 납부지연(체납)에 대한 제재(징벌)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서 ‘연체금’과 달리 지연기간에 비례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닌 지연기간에 관계없이 납부지연금액(체납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재정환수법은 제12조(가산금 및 체납처분)에서 체납액에 대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완납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60개월 초과 금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8조(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에서 납부기한 경과기간에 따라 이자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는 체납액의 1%, 1주일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2%, 1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3%,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4%, 3개월이 지난 날부터 60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다음날 완납하였을 경우 가산금은 체납액의 1%임을 알려드립니다.

Q

05

○○법에 과·오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환수 규정은 있는데 가산금, 체납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1. 부정수익자가 부정이익등을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하나요?
2. 부정수익자가 행정청의 독촉 후에도 부정이익등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절차에 따라 부정이익등을 징수할 수 있나요?

Q 5-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 환수법’) 제12조(가산금 및 체납처분) 제1항에서 ‘행정청은 제8조(부정이익 등의 환수)에 따른 환수 처분을 받거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A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항에서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또는 지원금이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 부당이득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는 통지 및 독촉에 관한 내용만 명시되어 있으며, 가산금 부과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부정수익자가 부정이익등을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12조제1항을 근거로 부정수익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Q 5-2

공공재정환수법 제12조제2항에서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처분 또는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 등을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가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행정제재부가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A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가금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부정수익자가 독촉 후에도 부정수익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12조제2항을 근거로 국세체납 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가금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를 준용하여 부정이익등을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공재정환수제도 안내

2020년 1월 1일,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 할 경우 부정이익 환수는 물론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지급금이란?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 법 | 시행령 |
|-------------------|---------------------------------------|
|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

제재부가금 부과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금액의 5배 이내 부과

| | |
|-------|--------------|
| 허위청구 | 부정이익 금액의 × 5 |
| 과다청구 | 부정이익 금액의 × 3 |
| 목적외사용 | 부정이익 금액의 × 2 |

부정청구등 유형

| | | |
|-----------|--|------------------|
| 허위 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제재부가금·부과·명단공표 대상 |
| 과다 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
| 목적외 사용 |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
| 오지급 |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

명단 공표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의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공표

누구든지 부정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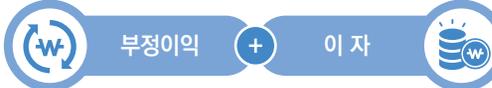
| | | | | |
|------------------|------|-------------|-----|------------------|
| 신고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 감독기관 | 국민권익 위원회 | 감사원 | 수사기관 (경찰, 검찰) |
|------------------|------|-------------|-----|------------------|

신고자 보호



부정이익의 환수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 환수



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지급

| | |
|-----------|---|
| 보상금 지급 |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
| 포상금 지급 |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나랏돈 사용이 더 투명해집니다.
”

•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등(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하면
부정이익등 환수 +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 명단공표



세상을 바꾸는
용기

신고자 보상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재정 부정수금 신고자 보상금
많이 신청해 주세요!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환수법

유권해석

사례집



발행처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홈페이지 | www.acrc.go.kr

공공재정환수법
유권해석 사례집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국민권익위원회